동작구의회공고 제2023-94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####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,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- 나.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, 대표의원의 변경, 소속의원의 변동·소속정당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섭단체의 의원 총 수가 3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 의원 총 수를 3인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및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·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함(안 제6조)

#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715, FAX : 820-1474, E-mail : kyh06800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####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회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 활하고 효율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교섭단체"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.
- 제3조(교섭단체의 구성)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 다만,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  -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.
  -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(이하 "대표의원"이라 한다)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연서·날인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4조(변경 등 신고)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.
- 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의원이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④ 교섭단체는 그 소속 의원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속 단체의 의원 총 수가 3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단체의 의원 총 수를 3인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교섭단체는 자격을 상실한다.

제5조(교섭단체의 기능)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1.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
- 2.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
- 3.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
- 4. 소속 정당과의 교류·협력
- 5.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- 제6조(예산 등의 지원) 의장은 제5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,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[별지 제1호서식]

#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

□ 교섭단체 명칭 : □ 구성연월일 :							
□ 대표의	1원 성명 및 직인						
	성 명 한 글 한 자		직	인			
□ 소속	의원 명부						
연 번	소속 정당	의원 성명	서 명	비고			

년 월 일

대표의원 🔾 🔾 🔾 (직인)

## 교섭단체 명칭(대표의원) 변경 보고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(대표의원)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#### □ 변경 사항

구 분	당 초	변 경

※ "구분"란에는 교섭단체의 "명칭 변경" 또는 "대표의원 변경" 등을 기재

#### □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

성	명	직 인
한 글		
한 자		

#### □ 소속 의원 명부

연	번	소속 정당	의원 성명	서 명	비고

※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"서명"란은 불요

년 월 일

대표의원 🔾 🔾 🔾 (직인)

##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#### □ 변경 사항

대 상	의 원	변 경 사 항		- 비 <sub>고</sub>	
교섭단체명	성 명	일 자	내 용*	사 유**	

- \* 변경 사항 중 "내용"란에는 "가입", "탈퇴" 등을 기재
- \*\* 변경 사항 중 "사유"란에는 "당적 취득", "의원직 상실", "사망" 등을 기재

년 월 일

대표의원 (직인) 또는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🔾 🔾 (서명)

#### ■ [별지 제4호서식]

## 당적 취득(소속정당 변경)보고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제3항에 따라 당적 취득(소속정당 변경)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#### □ 당적 취득보고

의원성명	당적 취득사항			고
<u> </u>	취득한 정당명	취 득 일 자	日	<u> </u>

#### □ 소속정당 변경보고

의원성명	정 당 변 경 사 항			비 고
기번 6 6	당초 정당명	변경 정당명	변 경 일 자	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🔘 🔘 🔾 (서명)

# 【 관 계 법 령 】

## ▶ 지방자치법

- 제63조의2(교섭단체)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
  -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  -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23. 3. 21.]